

2025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5년 12월 23일(화)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황건일 위원  
김종화 위원  
이수형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여자	김언성	감사	김응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권민수	부총재보
	박종우	부총재보	장정수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이지호	조사국장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윤경수	국제국장
	주재현	외자운용원장	백무열	법규제도실장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39호 -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함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는 주요 현안 분석으로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지역간 주택가격 차별화, 월세 비중 확대,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간의 관계 약화 등의 특징들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간 금융부문에 누적되어 온 수익 추구 동향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잠재리스크를 함께 점검하였음. 또한 금번 중장기 이슈 분석에서는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추진 경과와 제약요인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아울러 참고 자료에서는, 고연령층 부채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연령별 특징, 미 관세정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개인투자자의 국내외 주식 투자 간 관계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을 분석하였으며, 보다 긴 시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 제도화의 영향,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비은행권 경영여건 변화 등 관련내용도 함께 서술하였음.

다음으로 금번 보고서에서 담고자 한 세 가지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그간 정책당국의 노력과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 실물경기 개선세,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둘째, 최근 금리·주가·환율 등 가격지표들이 크게 움직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높은 점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취약부문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통해 불안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 정책 대응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경제주체의 수익추구 행위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거시건전성정책과의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음.

다음으로 지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부 위원은 금리·주가·환율 등 가격지표의 변동성뿐 아니라 가격 수준이 달라진 점도 대내외 충격에 따른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아울러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전이될 위험성에 더해 기대심리 강화로 가격 상승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leverage)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에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를 더 부각시

킬 필요가 있고, 부문별로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와 차주 기준 LTI가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의 성과를 중립적으로 평가하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데 있어 연령대별로 나타난 대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보고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안) (생략)

### <의안 제40호 -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지난 12월 16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시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경제전망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뿐만 아니라 외환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분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 분석 목적이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안) (생략)